

『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 R&D 유공』 포상계획 공고

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분야 우수 R&D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7. 29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시상 개요

□ 목적

- 바이오헬스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여,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

□ 시상일시 : 2025. 11. 28 바이오산업의 날(예정)

□ 시상부문

- (우수 기업 부문) 산업부 R&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, 매출·수출 신장, 고용 확대, 사업화 등 우수성과를 도출한 기업
- (우수 연구자 부문) 산업부 R&D를 통해 세계 최초·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 기여 공로가 있는 연구자
- (산업 육성·진흥 부문) 산업부 R&D 정책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산업 육성 및 발전 기여 공로가 있는 유공자

< 선정 대상 기준 >

- (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) 산업부 바이오헬스분야 R&D 수행을 통해 최종평가에서 ‘우수(혁신성과)’, ‘완료(보통)’ 판정을 받은 기업·연구자(연차 및 단계평가 시 ‘조기종료(우수), 조기종료(완료)’)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)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·연구자

- (산업 육성·진흥 부문) 산업부 바이오헬스분야 R&D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·수행 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

* 바이오헬스분야: 의약산업/융합 바이오분야, 의료가기분야, 헬스케어분야 산업부 전 R&D사업

□ 시상방식

- 산업부 바이오헬스 R&D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, 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

□ 시상내용

- 산업부 바이오헬스분야 R&D 우수기업 및 연구자, 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 총 12점

분야	부문	시상규모(예정)	
바이오헬스분야 (바이오·의료기기·헬스케어)	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우수기업	3점
		우수연구자	2점
		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	1점
	KEIT 원장상	우수기업	3점
	한국바이오협회장상	우수연구자	2점
		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	1점

*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

* 장관표창 수상 기업 및 연구자는 시상식 당일 수행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

2. 신청(추천) 자격

□ 우수 기업 및 우수 연구자 부문 기본요건

- 산업부 지원 R&D사업 중 바이오헬스분야(바이오·의료기기·헬스케어) 지원과제 수행자
-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
- 상훈법령(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)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

□ 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 부문 기본요건

- 산업부 바이오헬스분야(바이오·의료기기·헬스케어) 육성 및 진흥을 위해 R&D 정책 수립·수행, 현안 해결 등 공적이 있는 자
-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
- 상훈법령(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)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

□ 기업표창(우수 기업) 제한사항

-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

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□ 개인표창(우수 연구자, 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) 제한사항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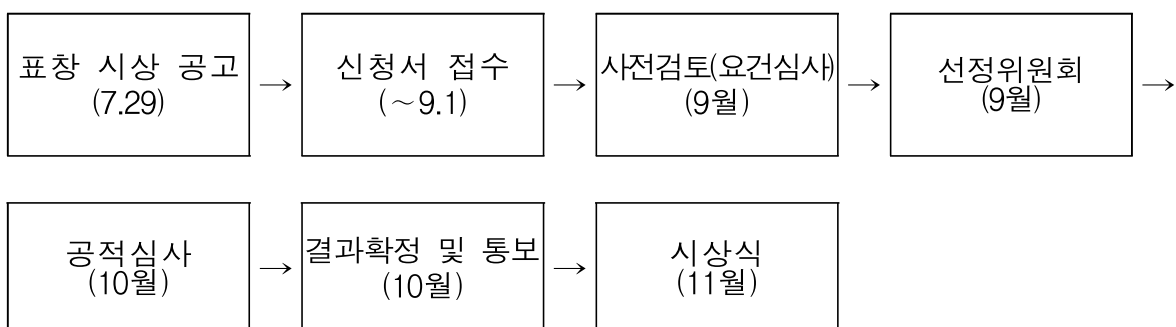
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추천제한자 등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,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3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선정절차



* 사전검토 :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, 휴·폐업, 회계현황, 국가 R&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

*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부문	평가항목	평가 세부 기준
우수 기업	기술적 성과 및 사업화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/비용절감의 우수성 ◇ 지원과제(개발기술)와 연관성 및 기술적 우수성 ◇ 혁신기여도(기술이전, 국산화, 수입대체, 시장개척, 기법 및 공정, 생산성 등)
	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고용효과(신규 인력 창출 효과) ◇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(전체 매출액 기여도, 기술이전, 해외진출 성공 등) ◇ 미래사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파급정도
우수 연구자	기술적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◇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◇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(특허, 논문 등)
	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◇ 개발기술의 전·후방 연방효과 ◇ 미래사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파급정도
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	활동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R&D 정책 지원 활동의 필요성, 목적성 ◇ 정책 지원 활동의 양적·질적 수준, 난이도 ◇ 정책수립·실현 또는 현안 해결 정도
	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산업 육성 및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◇ 정책성공을 위해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 기여한 정도

4. 관련 서류제출

□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관련양식 :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itech.keit.re.kr)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 - * itech.keit.re.kr > 알림·정보 >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- 신청서 접수처 및 문의 :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
 - 연락처 : Tel. 053-718-8633, 8256, 8515 / E-mail : hj_kim@keit.re.kr
- 접수방법 : E-mail 접수
 - * 직인, 서명 등이 포함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
- 접수기한 : 2025. 7. 29. (화) ~ 09. 1. (월) (E-mail 수신 기준)

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

○ 제출서류

- 우수기업, 우수연구자, 산업 육성·진흥 유공자 신청서 및 신청서식 (별첨서식1)
- (우수기업, 우수연구자 부문 신청자)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및 실적 양식(별첨서식2)
- (우수기업부문 신청자) 사업자등록증, 2022년~2024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)

○ 참고사항

- 직인(서명) 날인 필요한 제출서류는 PDF파일(원본 스캔) 제출
- 신청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

□ 유의사항

-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-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